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재나13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22 자 2016재나13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2나115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0가단23220 판결

전 문

원고 승계참가인(재심피고), 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피고(재심원고), 항소인 A

변론 종결 2016. 12. 8.

판결 선고 2016. 12. 22.

재심대상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2나1157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항소 취지 및 재심 청구 취지

1. 청구 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 승계참가인(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42,541,2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1. 12. 1.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2,24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23220호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를 승계참가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2. 23.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1. 15. 제1심 판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대법원 2014다6152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4. 30.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판단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알 수 있으므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위 단서 규정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3. 11. 25. 피고에게 송달되고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유탈 내지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재심사유로 삼아 제기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승호

판사설충민

판사송인경

별지